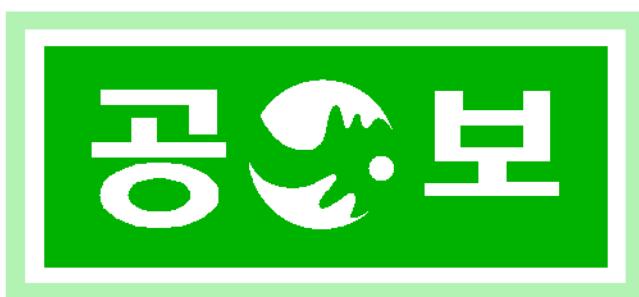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공<br>람 | 기 판 의 장 |
|--------|---------|



제 691 호 2011. 6. 2(목)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70호[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] ..... 2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72호[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 ..... 6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2호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 ..... 8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3호[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0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6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1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89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3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93호[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 15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70호**

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네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·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
규칙안 입법예고****一 개정 이유**

-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.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함.

**二 주요 내용**

- 수강료 감면 대상 및 비율 개정(안 제16조)

**□ 의견 제출**

-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
**□ 기타사항**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별표 2]

### 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대 상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면 계<br>50% 감면<br>20% 감면 | <p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br/>          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br/>           3)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</p> <p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/>          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</p> <p>3) 올산평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중 복지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자</p>  |    |
| 그비서록                    | <p>1) 수강료 감면 신청서<br/>           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<br/>      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/>           - 장애인증명서<br/>           - 주민등록증<br/>           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 <p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중복 감면시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p> |    |

## [붙임 2] 신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  | 개 정 안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---|---|---|-----|-----|--|---|---|---|--|---|
| <p>제16조(수강료의 감면) ① 수강료<br/>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의 수<br/>강료 감면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구<br/>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<br/>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별표2</p> <p>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</p>   |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행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/>활보장수급자<br/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제16조<br/>감면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/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구비서류</td> <td>1) 수강료 감면 신청서<br/>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<br/>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/>- 장애인증명서<br/>- 고등학교 졸업증<br/>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<br/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/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| 구 분   | 대 상 | 현행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>활보장수급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| 제16조<br>감면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 | 구비서류  | 1) 수강료 감면 신청서<br>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<br>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>- 장애인증명서<br>- 고등학교 졸업증<br>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<br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|   |
| 구 분   | 대 상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현행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>활보장수급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제16조<br>감면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구비서류  | 1) 수강료 감면 신청서<br>2) 대상자의 해당증명서<br>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>- 장애인증명서<br>- 고등학교 졸업증<br>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<br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  |   | <p>별표2</p> <p>수강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대 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행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/>활보장수급자<br/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br/>3) 국가보조금수령 우편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<br/>국가유동가(신설)</td> </tr> <tr> <td>제16조<br/>감면</td> <td>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/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구비서류</td> <td>1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/>- 주민등록증<br/>2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/>- 주민등록증<br/>- 장애인증명서<br/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/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br/>※ 중복 치료시 주민등록이 2개 이상인 경우<br/>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.(신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대 상 | 현행 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>활보장수급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br>3) 국가보조금수령 우편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<br>국가유동가(신설) | 제16조<br>감면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 | 구비서류   | 1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>- 주민등록증<br>2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>- 주민등록증<br>- 장애인증명서<br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br>※ 중복 치료시 주민등록이 2개 이상인 경우<br>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.(신설) |
| 구 분   | 대 상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현행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<br>활보장수급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<br>3) 국가보조금수령 우편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<br>국가유동가(신설)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제16조<br>감면  |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<br>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 ~ 6급 장애인  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| 구비서류  | 1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>- 주민등록증<br>2) 온 선상복식 상이 판정한 자원봉사자 증명서<br>- 주민등록증<br>- 장애인증명서<br>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<br>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<br>※ 중복 치료시 주민등록이 2개 이상인 경우<br>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.(신설) |   |     |     |  |   |   |   |  |   |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72호**

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**□ 개정 이유**

- 제3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외세대의 학습자에게 수업료 김면 대상을 병시합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.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니ーズ를 활성화하기 위한.

**□ 주요 내용**

- 제3대학 수업료 김면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 2)

**□ 의견 제출**

- 우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올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평생교육과장, 올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
**□ 기타사항**

- 개정안 전문은 올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2호**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\_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\_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확산으로 힙습을 통한 나눔 활성화
- 문화예술회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활성화

**2. 주요내용**

-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(인 세13조의 3)  
⇒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중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: 수강료의 20% 감면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문화홍보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과(전화 052-219-7400, FAX 052-219-740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 
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383호

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두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취지

-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중 소지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료를 감면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대회의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그 비율 추가
  - 자원봉사자중 소지자에게는 대회의실 사용료의 100분의 20감면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(참조 : 시설재난관리과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전화 : 052-219-7652, FAX : 052-219-7659)

- 의견제출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배치하고 여고기간 농연 공시합니다.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6호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-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,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,
-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, 사무국장 실비보상,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“동사무소”를 “동주민센터”로 개칭
-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내상을 국가유공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까지 확대
- 현행 조례에 없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
-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“25인 이내”에서 “30인 이내”하고, 주민자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“간사”的 명칭을 “사무국장”으로 개정
-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성 보장을 위해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
-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찰조 : 총무과장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219-7233, FAX 219-723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지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총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389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 이유

- 사원봉사사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실시로 사원봉사 활동 관심유도와 참여문화 활성화
- 사원봉사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규정 마련

#### 2. 주요 내용
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항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(안 제6조제4항제8호)
  - 사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(북구 주민에 한함)

#### 3. 의견 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6.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창조 : 교통행정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(전화 052-219-7460, 패스 052-219-74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-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- 393호**

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일  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적법화를 위해 우수 사원봉사사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강습료 및 일일입장료의 100분의 20 감면(안 제10조 제1항 별표3)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시설재난관리과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657, FAX 219-7660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**4. 기타**

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배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